

#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8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화숙,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 경,  
김생환, 김소영, 김종무,  
김혜련, 문병훈, 박기재,  
송명화, 여 명, 오한아,  
이광호,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태성,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의원(30명)

## 1. 제안이유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식품부터 생활용품 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 최근 경기 침체 등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그 내용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항 및 보조금 지원, 교육·홍보, 평가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반영함.(안 제 6조)
- 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라.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 마.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기부식품 등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를 추가함.(안 제11조)
- 바.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첨부)

##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2.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 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3.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실태조사
5.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통계 관리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7.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3조의2, 시행령 4조의2에 따른다.

⑤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부식품 등을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을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 정보 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평가) ① 시장은 법9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 주기에 맞춰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이외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p> <p>1. <u>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u></p> <p>2.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 ----- -----.</p> <p>1. <u>이용자에게 무상제공</u></p> <p>2. ~ 4. (현행과 같음)</p> <p><u>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1. <u>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u></p> <p>2. <u>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u></p> <p>4. <u>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u></p> <p>5. <u>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실태조사) ① -----  
-----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2.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 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3.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5.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

켓) 통계 관리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7.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3조의2, 시행령 4조의2에 따른다.

⑤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  
-----  
-----

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2조·제13조 (생략)

<신설>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부식품 등을 취식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 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0조(교육·홍보) ① -----  
-----  
----- 식품위 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 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6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평가) ① 시장은 법9조의2 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 주기에 맞춰 사업자의 기 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p><u>평가해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이외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u></p>
--	--